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11
----------	-------

발의연월일 : 2026. 7. 29.

발 의 자 : 김남준·박민규·허종식
한준호·모경중·조계원
송영길·이학영·김정호
정준호·이광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 및 양여 방식에 따른 군사시설 이전사업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군사시설을 이전받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 및 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최근 국방혁신 추진 과정에서 도심지에 산재한 군사시설을 통합·이전하여 군의 작전 효율성을 높이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탄약고 등 군사시설을 이전받는 지역은 안전 우려, 개발 제약 및 생활환경 변화 등의 부담을 수반하게 되어 주민 수용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가 군사시설을 통합·이전하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전지역 지원사업을 하도록 하고,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국방·군사시설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사시설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이전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이전지역 지원사업 등) ① 제3조제4호에 따라 지정된 사업 시행자는 제12조에 따라 국가에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양여받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새로 설치한 국방·군사시설이 소재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미리 이전지역의 주민·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의 가액에서 새로 설치하는 국방·군사시설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은 제1항의 대체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국방부장관은 국방·군사시설의 원활한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국방·군사시

설이 소재한 시·군·구에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원사업의 종류·절차 및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부 및 양여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시행 중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2조의2(이전지역 지원사업 등)</u> ① 제3조제4호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제12조에 따라 국가에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양여받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새로 설치한 국방·군사시설이 소재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미리 이전지역의 주민·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의 가액에서 새로 설치하는 국방·군사시설의 가액

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사업
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은 제1
항의 대체시설에 포함되는 것
으로 본다.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군사시
설의 원활한 이전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국
방·군사시설이 소재한 시·군
·구에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양여할 수 있다. 이 경
우 국방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
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원사업의 종류·절차 및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